



시장개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 연구용역 결과

시장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공정위가 KDI에 용역 의뢰한 「시장개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동 보고서에는 기업의 내·외부통제시스템의 평가지표 및 이를 이용한 측정결과,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대한 분석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9. 19. 시장개혁 T/F 논의를 거쳐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동 연구용역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결과 상장회사들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지수가 '01년 17점(100점 만점), '02년 20점, '03년 38점으로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 절대수준이 낮고, 특히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매우 약하며 사외이사의 경영감시기능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증분석 결과 지배주주의 존재는 강화된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 경영감시기능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외부통제시스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결과 제도 도입여부를 측정하는 제도수준 지표들은 평균 82점으로 벤치마크 대상인 미국(89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제도의 작동수준을 나타내는

집행수준 지표들은 평균 45점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분석결과로는 '03년 현재 37개 민간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지배권(control rights)과 현금흐름권(cashflow rights)간의 괴리도가 평균 18.6%p로 지배-소유 괴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소유 괴리도가 큰 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기간 도입된 기업 내·외부 통제시스템의 작동을 저해하는 근본요인으로 다양한 사업영역을 지니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기업집단 General Electric Company(GE)의 경우 지주회사만 상장되어 있고 수많은 자회사들은 모두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개별기업단위의 지배구조시스템이 개별 지배주주의 각 계열사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에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였다. 한편, 대규모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실제로는 커다란 영향력을 각 계열사에 행사하면서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주체가 되어 있지 않아 내·외부 통제기구의 작동을 방해하고 있다.

동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과 지배권간에 괴리가 클수록 기업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기업집단의 출자비율에 대한 규제가 기업집단의 대리인 비용(지배-소



유 괴리도)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기업집단 전체 출자비율에 대한 상한규제가 없을 경우 지배주주는 현금투자 지분을 늘리지 않고 계열사간 출자를 늘려 안정적인 지배권을 확보하는 반면, 출자비

율에 대한 상한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현금 투자지분을 늘려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므로 지배권-소유권간 괴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 연구용역보고서 요약본은 본지 '부록(87면 이하)'을 참고하기 바람

2003년도 상반기 기업결합동향

2003년 상반기 기업결합동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서도 SOC투자, 건설·운수 및 정보·통신·방송분야 및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 기업결합이 비교적 활발했던 이유로 미미하지만 기업결합 건이 '02년 상반기 대비 0.7% 증가함으로써 2000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던 감소추세가 멈추고 약간의 회복세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고, 결합금액은 총 4.2조원으로 '02년 상반기(4.5조원) 대비 7.1% 감소하였는데, 임원겸임건의 증가에 따른 전체 결합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식취득 중 자본적 결합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오히려 전년 동기에 비해 11.9%감소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형별 기업결합동향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수평결합은 36.5%, 수직결합은 41.9% 증가하였으나 혼합결합은 16.6%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내외적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기에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기존 시장의 확대나 시장지배력 강화 또는 원료 및 유통부분과의 수직

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확보로 경영방향을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단별 기업결합동향을 살펴보면 임원겸임은 대폭 증가하였고 주식취득은 약보합수준이나 영업양수는 24.4%, 회사설립은 20.5%, 합병은 11.4% 각각 감소하였다. 임원겸임의 증가는 기왕의 주식취득 등을 통한 경영권 지배정도를 인적결합을 통해 더 강화하거나, 경기침체기에 기술·경영인력의 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들이 노력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영업양수, 회사설립, 합병 등의 감소는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축소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업종별 기업결합동향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기업결합건수가 제조업의 경우 기계·금속분야를 제외한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음식료분야 등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냄으로써 전체적으로 17.1%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의 경우, 정보통신·방송(28.3%) 및 유통분야(19.2%)에서의



증가를 비롯하여 특히 건설(109.0%) 및 운수분야(90.0%)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반면 금융분야에서는 32.2% 감소율을 나타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동향을 보면, '03년 상반기 외국인에 의한 기업결합은 전체 기업결합건수의 19.3%로서 전년 동기 대비 34.9% 증가하였고, 기업결합 금액 규모는 14,3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8% 증가하였는데, 일본업체의 투자와 EU 등 유럽의 아시아시장의 거점확

보 차원의 투자확대가 기업결합건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건수(10건)는 전년 동기(24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고 과태료 규모는 60.9% 감소하였다.

공정위는 '03. 5. 2,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03. 7. 1. 시행)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현재 기업결합심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전반적인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미등록·불법 다단계업체 근절대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끊임없이 다단계판매 시장을 혼탁하게 해온 미등록·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과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소비자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금년 초 다단계판매 시장에 두 개의 공제조합(직접판매·특수판매 공제조합)이 설립·운영되면서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해지고, 다단계판매 시장에 보험원리를 통한 자율정화체계가 구축된 바 있으나, 공제조합 가입을 하지 않고 행정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음성적인 다단계판매업자가 시장에 잔존하고 있어 다단계판매 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심각한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 미등록·불법 업체는 다단계판매 업체에 등록 의무 등을 부과하여 관련 소비자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방문판매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다단계판매 시장의 질서를 극도로 교란하고 있는 존재이고, 또한 미등록 다단계업체가 등록업체보다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에 미가입한 상태이므로 피해보상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

공정위는 현재 약 200개 정도의 불법업체를 파악하고 있는데, '03. 9월중 이들 업체에 대하여 공정위·각 지자체 합동조사 후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시정조치 등 필요한 행정처분과 검찰의 수사 및 형벌 부과가 필요한 사안은 검찰에 통보하여 사법처리하며, 추가적인 불법업체 파악을 위해 각 지자체, 소비



자단체, 다단계판매 관련 협회, 공제조합 등과 함께 미등록·불법 다단계업체에 관한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고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도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공제조합 미가입 또는 공제계약 해지·중지 업체, 방문판매업체로서 다단계판매행위를 한 업체, 전혀 등록·신고하지 않고 다단계판매행위를 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할 방침이며, '03. 9월중 다단계사업자 및 소

비자를 대상으로 다단계소비자피해보상 제도 설명과 불법업체 식별법 등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각 급 지자체 방문판매법 담당공무원의 법령 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도모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사업자 보호를 위해 「다단계-방문판매구분기준고시」 및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련제도 정비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예금거래기본약관』 개정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예금거래에서의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3. 8. 22.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예금거래기본약관』 개정을 승인하였다.

이번 약관 개정은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등의 제반 금융환경 변화와, 최근 고객 비밀번호 보호를 위한 은행의 신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의 변화를 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약관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비밀번호 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의 도입으로, PIN-Pad(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Pad, 비밀번호 입력기) 시스템이 고객의 비밀번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은행에 새롭게 도입됨에 따

라, 예금개설 및 예금인출, 기타의 예금거래에서 비밀번호를 고객이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비밀번호의 유출을 방지하고, 특히 기존에는 고객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 약관은 영업점 및 일간신문 게시만으로 통지에 갈음하여 고객의 약관 변경에 대한 인지가능성이 미약했지만, 은행 예금거래와 관련된 약관 변경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일간신문·전자우편(E-mail)·거래통장·CD/ATM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시, 통지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변경약관에 대하여 반대하는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계약해지권을 부여하였고, 셋째, 예금이자율 변동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거치식·적립식 예금 중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예금의 경우 예금계좌 개설시 및 이자율 변경시 이자율 적용방법과 변동된 이자율을 통장에 표시하여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하였고, 예금종류별 이자율을 바꾼 경우 영업점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1개월간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변경신고 방법을 개선하여 주소나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거래정보 변경시 기존의 서면에 의한 신고뿐만 아니

라, 인터넷·전화·CD/ATM 등의 전산통신기기를 통한 다양한 신고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 PIN-Pad System이란, 비밀번호가 필요한 은행거래에서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입력기(PIN-Pad)를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거래함으로써 내부직원이나 제3자로부터 고객의 비밀번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고객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는 제도를 말함

※ 「예금거래기본약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본지 '부록(93면 이하)' 을 참고하기 바람

주상복합건물 분야 시장개선대책

- 주상복합건물 분양 및 건설 관련 실태조사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상복합건물 분야의 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3. 4. 28~5. 17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시공과 관련된 33개의 시행사 및 시공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들어 주상복합건물이 신 주거개념으로 새로이 부각되면서 일반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이 자유로와 일반 소비자에게 매력있는 투자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상당수의 시행사와 시공사들이 허위·과장광고나 불공정약관, 그리고 하도급 횡포 등 불공정거래를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여 24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행위,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주상복합건물을 분양 받아 임대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만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됨에도 모든 분양자가 면제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특정 평형(35~56평)은 무주택자라도 취·등록세를 감면받지 못함에도 마치 모든 평형에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처럼 허위표시·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또한 일반 아파트 기준 분양면적에 주차장면적을 포함시키는 방법 등으로 분양면적을 넓혀서 광고하거나 실제 전용면적 비율이 68%임에도 75~82% 및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



에 대한 사실표기 없이 건축허가 전에 분양광고를 하고, 조사대상 아파트보다 비싼 아파트만 비교하고 싼 아파트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비교광고 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실 및

이자, 연체료 등 위약금 미환불 조항, 제세공과금 부담 조항, 계약해제권 행사요건 완화 조항, 이의제기 금지조항, 고객의 권리배제 조항, 소송관할 등 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 등이 적발되었다.

2003. 8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공정위는 2003년 8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21조제3항에 의거하여 2003년 9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3년 8월중 15개 출자총액제한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3. 9. 1. 현재 348개로 전월과 동일하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34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3. 8. 1. 현재 488개로 2개사가 감소하여 공정거래법상 4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3. 8. 1. 현재 838개에서 2003. 8월중 2개사가 신규편입 되고, 4개사가 계열제외 되어 2003. 9. 1. 현재 836개로 2개사가 감소하였다.

[2003. 8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3. 8. 1.	편 입			제 외						증감	2003. 8. 1.
		회사 설립	주식취득 및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천주 분리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5개)	348	1	1	2	-	-	1	-	1	2	-	348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49개) ¹⁾	838	1	1	2	-	2	1	-	1	4	△2	836

* 주 1) 15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포함



[2003.8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2개사(회사설립 : 1, 주식취득 : 1)

◆ 제외 : 4개사(지분매각 : 2, 청산종결 : 1, 기타 : 1)

기업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 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 유
삼 성	삼성 아토피나(주)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도매	회사설립	-	-	-
한 화	양주 엔바이로(주)	하수처리 관리 운영	주식취득	한화통신(주)	국제전화사업 및 정보통신사업	청산
현 대	-	-	-	현대종합상사	종합무역업	기타
영 품	-	-	-	(주)이베레페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지분매각
대 상	-	-	-	대상유통(주)	그 외 기타 종합소매업	지분매각



공정위 인사동향

발령

2003. 9. 1.

- 독점국 독점관리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기간 : 2003. 9. 1~별도발령시 까지)

서기관 **박귀찬**(총무과)

2003. 8. 25.

- 지방행정사무관(충남도청 근무)에 임함.
- 정책국 국제기구과 근무를 명함.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기획단 파견근무를 명함.
(파견기간 : 2003. 8. 25~2004. 8. 24)

행정사무관 **이정구**

지방행정사무관 **노원일**(충남도청)

행정사무관 **박정현**(국제기구과)

전보

과장급

2003. 9. 15.

- 업무혁신작업단 부단장 겸 ICN준비기획단 부단장에 보함.
(기간 : 2003. 9. 15~별도발령시 까지)

서기관 **신호현**

2003. 8. 22.

-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서기관 **장상진**(독점관리과장)

서기관급

2003. 9. 1.

- 총무과(인사) 근무를 명함.

서기관 **황정곤**(공동행위과)